

4대 보험료, 공사원가에 반영 2006년 1월 1일 계약부터 적용 국토부, 내역서 명시해 원수급자에 지급요구 가능

하도급자가 2006년 1월 1일 이후 계약한 공사부터 4대 사회보험을 내역에 명시, 원수급자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는 국토해양부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토부는 한 전문건설업체가 제기한 민원에 대한 회신에서 “건설공사와 관련해 건설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회보험료가 공사원가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 2004년 12월 31일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개정시 2006년 1월 1일 이후 최초 도급계약 체결분부터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하는 것을 의무화 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또 “따라서 2006년 1월 1일 이후 하도급계약을 체결했으나 하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국민연금 등의 보험료를 따로 명시하지 않았다면 하도급계약변경 등으로 보험료를 따로 명시해야 하고, 수급인이 지급할 하도급계약금액에 포함됐다면 수급인은 보험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유권해석 했다.

민원을 제기한 A사는 서울 뉴타운 공사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로 2007년도에 도급계약 체결된 공사에 대해 원도급사에 4대 사회보험료를 지급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원도급업체가 보험료 정산제도가 도입된 2008년 1월 이전의 계약이라 보험료를 지급할 수 없다고 거부해 국토부에 민원을 제기했다. A사는 국토부에 ‘하도급계약시 하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국민연금보험료 등을 별도 항목으로 따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 계약변경해 별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했다.

A사 관계자는 “전문건설업체들은 시공참여자가 고용한 근로자분의 보험료까지 추징당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업체들이 2006년도분부터 사회보험료를 받을 수 있다”며 “이번을 계기로 원도급업체들에게 보험료는 공사내역에 꼭 반영하고 지급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